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성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3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발 의 자 : 이성배, 이영실, 권수정,
임종국, 경만선, 고병국,
이병도, 권영희, 김정태,
문병훈, 여명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공기업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골자

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총괄한다”를 “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장) ① (생 략)</p> <p>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 의 업무를 <u>총괄한다</u>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9조(사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</u> <u>하여 책임을 진다</u>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